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2018년 2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K-IFRS 제 1116 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추진

세무 및 법률정보

- 2017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공포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K-IFRS 제1116호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18.1.]
K-IFRS 제1116호
관련 주식공시 모범
사례
개요
1. 개요
 상장기업 등은 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제정·공표되면 新 기준에 따른 주요 영향에 대해 주식 공시(*주)해야 합니다.

(*주)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주)를 공시

(**주)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

- (1) 새로운 K-IFRS 명칭
- (2) 회계정책 변경이나 예정된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 (3) 새로운 K-IFRS 의무 적용일
- (4)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 예정일
- (5) 다음 중 하나의 사항
 - (가)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나)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효과에 관한 기술

◦ 회사의 상태에 변화가 없음에도, 新 기준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가 달라짐을 정보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

※ 新 리스기준(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도 리스자산·부채를 계상하여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19년 시행을 앞둔 新 리스기준의 도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한 바,

◦ 상장기업 등은 新 리스기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

K-IFRS 제1116호
'리스'주요 개정 내
용
2. K-IFRS 제1116호'리스'주요 개정 내용
 (리스이용자) 현행 비용처리하는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주)하여 회계처리

(*주) 다만,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와 소액리스(예, 기초자산 \$5,000 이하)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로 지급시 비용만 인식할 수 있음

리스계약이란?

√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리스계약에 해당

(예시)

- ① 선박, 항공기, 자동차의 리스계약 → 리스 해당
- ② 사무용복합기 36개월 렌탈계약 → 리스 해당
- ③ 복리후생 목적의 안마기 48개월 렌탈계약 → 리스 해당
- ④ 거푸집, 계측기, 크레인 12개월 임대계약 → 리스 해당
- ⑤ 사무실 24개월 임차계약 → 리스 해당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자산	금융리스자산		사용권 자산	영업비용	-	리스료	
부채	금융리스부채		리스부채		리스자산 상각비		사용권자산 상각비
		최소리스료 (주석기재)		금융비용	이자비용		이자비용

□ (리스제공자) 현행과 비슷하게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3.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 新 리스기준의 적용과 그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
 - ※ 회사의 상황과 재무제표 분석 정도에 따라 예비적 또는 구체적 영향을 기술

가. 리스이용자

□ 새로운 리스기준 적용방법을 공시하고 상황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

◦ (예비적 영향 기술) 앞으로 지불해야 할 리스료 총액과 그 금액을 할인한 금액(증분 차입이자율(*주)을 할인율로 사용)을 기술하되,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여부에 따른 그 내용을 기재

(*주)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직접 취득하기 위해 차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율

리스이용자의 예비적 영향분석 (예시)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XXX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XXX백만원입니다.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구체적 영향 기술) 예비적 영향 기재사항(*주)에 더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비용의 증감도 기술하고,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경우 非리스요소(**주) 비율을 추가 기재

(*주)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 총합계, 최소리스료를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주) 리스료에 리스자산의 관리업무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요소

나. 리스제공자

□ 유의적 회계처리 변동 유무에 따른 영향 및 중간리스제공자에 대한 영향도 기재

◦ (예비적 영향 기술) 유의적인 회계처리 변동이 없어 재무영향도 없음을 기술하고, 유의적인 회계처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재무 영향의 추정이 어려움을 기재

◦ (구체적 영향 기술) 유의적인 회계처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리스채권 및 이자수익에 대한 영향을 기재

➔ (기대효과)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은 新 리스기준 시행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대비 할 수 있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 시 재무영향을 기업별로 평가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입수가능

리스이용자의 구체적 영향분석 (예시)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XXX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XXX백만원입니다.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으로, 계약대가 총금액 XXX백만원 중 XX%인 비리스요소를 구분하였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X년 XX월 XX일 기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XXX백만원, XXX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X년 기준으로 운용리스료비용 XXX백만원이 감소하고,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XXX백만원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XXX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재무영향 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

4. 향후계획

□ (안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 사항을 안내하여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당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기준변경에 따른 재무영향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 및 교육 실시

□ (점검) 금융감독원은 新 리스기준 관련 주식공시사항을 점검하여 기업이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

□ (향후 모범사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회계기준서별로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여 충실한 주식 기재를 유도

[참고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및 발표 현황**[참고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및 발표 현황**

(성격)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본 모범사례에서 제시한 공시사항을 가감·변경하여 사용

(발표 현황) '13.11월부터 총 5건 발표

- 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13.11.11.)
- ② 타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3.12.30.)
- ③ 공정가치 측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4.5.29.)
- ④ 금융자산 양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5.12.23.)
- ⑤ 금융상품(제1109호),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7.1.3.)

☞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참조

K-IFRS 제1116호 관련 주석공시**[주석공시 모범사례 2018-1]
K-IFRS 제1116호 관련 주석공시****1. 중요한 회계정책**

201X년 XX월 XX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스의 식별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 기재사항

회사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판매후리스를 보유하는 경우 추가 기재사항

판매후리스와 관련하여, 회사(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적용일 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1.2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 1 : 완전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201X년 XX월 XX일을 기준으로 완전 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할 예정입니다.

□ 상황 2 :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201X년 XX월 XX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 상황 1 :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XXX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XXX백만원입니다.

◆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관련 실무적 간편법 적용하는 경우 선택 기재사항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 선택 기재사항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상황 2 :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XXX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XXX백만원입니다.

◆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 관련 실무적 간편법 적용하는 경우 선택 기재사항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한 경우 선택 기재사항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으로, 계약대가 총금액 XXX백만원 중 XX%인 비리스요소를 구분하였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X년 XX월 XX일 기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XXX백만원, XXX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X년 기준으로 운용리스료비용 XXX백만원이 감소하고,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XXX백만원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XXX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재무영향 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1.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방법 및 재무적 영향

□ 상황 1 :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음)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2 :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짐)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계약의 식별, 리스 구성요소의 분리 등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예비적인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상황 3 :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계약의 식별, 리스 구성요소의 분리 등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변동되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1X년 XX월 XX일 기준 금융리스채권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하고 201X년 기준 이자수익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기재사항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최초적용일 이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고 최초 적용일에도 유지되는 전대리스에 대해 회사는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분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판단결과 해당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면 최초 적용일에 체결되는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 상황 1 :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기준 전대리스계약은 XXX백만원이나,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분류의 판단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예비적인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상황 2 :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결과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되어 201X년 XX월 XX일 기준 금융리스채권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하고 201X년 기준 이자수익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IFRS 제1116호 [K-IFRS 제1116호‘리스’주요내용]
 ‘리스’주요내용**

□ (적용범위)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인 모든 리스에 적용

□ (이용자 회계처리) 거의 모든(*주) 리스약정에 대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을 인식

(*주)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와 소액리스(예, 기초자산 \$5,000 이하)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할 수 있음

◦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미지급된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 리스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 최초 측정치에 선급리스료(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로 측정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자산	금융리스자산		사용권자산	-	리스료		
부채	금융리스부채		리스부채	리스자산 상각비		사용권자산 상각비	
				금융비용	이자비용	이자비용	
		최소리스료 (주석기재)					

□ (제공자 회계처리)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 이전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

◦ 금융리스는 받게 될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수취채권으로 인식

- 운용리스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
- (공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 장부금액·감가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만기분석, 리스부채에 미반영된 미래현금유출 요인(변동리스료, 연장·종료선택권, 잔존가치보증 등) 등을 공시하고,
-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매출손익·금융수익, 운용리스료 수익,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와 관련된 위험관리방법(재구매약정, 잔존가치보증, 한도 넘는 사용에 대한 변동리스료) 등을 공시
- (판매후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시기(통제*의 이전 시점)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회계처리
- * 통제: 자산(재화·용역)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K-IFRS 제1115호 문단 33)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경우 조기 적용 가능
- (경과규정)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 리스이용자는 ①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완전 소급법), ②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선택할 수 있음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추진**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추진
[금감원 2018.1.26]

◆개발비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 등을 안내하고 이를 분석·점검하여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

개요
1. 개요

□(배 경)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며 동업종의 개발비 관련 회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으로서 관련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

□(규 모)'16년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152사)(*주) 중 55%(83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중이며, 전체 잔액은 약 1.5조원(**주)수준

(*주)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주)상장사 전체 개발비 잔액(13.7조원) 중 제약·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

◦이 중 코스닥 기업들이 계상중인 금액이 1.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제약·바이오 상장사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타업종에 비해 높은(*주) 수준(기업별로 0~40%까지 다양,

(*주)상장사 전체 총자산 중 개발비 잔액의 비중은 1% 미만(개발비 미계상 회사 포함 기준임)

현황
2. 현황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영업이익↑)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영업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비용처리 대신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적용현황)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전임상) 자산화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자산화 시점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주석공시하는 내용이 미흡(*주)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 및 기업간 비교 등도 어려운 상황

(*주)공시회사비율:연구개발비지출총액 55%, 중요한개별자산설명 6%, 손상차손원인사건설명 0%

□(위험요인)IFRS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므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와 해외기업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신약(바이오시밀러 등 포함) 개발 과정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표준화된 절차(*주)를 따르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차이를 두드러지게 함

(*주)'신약후보물질발굴→전임상→임상1상→임상2상→임상3상→정부판매승인→판매시작' 등

◦또한 낙관적으로 자산화하였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

◦다만 원칙중심의 IFRS 특성상 감독당국이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대응방안
3. 대응방안

□(유의사항 안내)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 및 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회사·감사인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또한 주석내용의 충실한 기재를 통해 기업간 재무위험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

□(점검 및 테마감리)'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하여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 착수

※동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의 적용, 테마감리 실시('18년중) 등은 제약·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개발비 비중이 높은 다른 산업의 회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개발비 회계처리 관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련 유의사항 안내**회사**

가. 회사

(일관성)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주)하고 일관되게 적용

(*주)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기준서 표준문구 그대로 인용 금지)

◦또한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원가(재료비, 노무비 등)는 당해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하여야 함

(입 증)기준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비의 자산화가 허용되므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후 외부감사 등에 대비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

◦특히 IFRS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유의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K-IFRS 제1038호 문단57)

- ①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②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③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④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⑤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⑥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손상검사)개발비(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평가 등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특히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엄격히 실시

(주석공시)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기업간 재무정보 비교·분석을 위해 주석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

◦이를 위해 「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주)하므로 주석사항 작성시 참고할 필요

(*주)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내용
①개발비 자산화 기준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단계 등 자산화 시점 및 근거를 기재

②중요한 개별 무형자산 내용 등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성격 및 규모 등에 근거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항목별로 설명내용(프로젝트 내용, 개발 진행 단계 등) 및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등을 기재

③손상차손 관련 정보

-손상차손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회수가능액 및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할인율 등을 기재

④연구·개발 지출총액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를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 항목별로 구분 기재

⑤증감금액 구분표시

-개발비 증가금액을 내부개발, 개별취득, 사업결합 취득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감소금액도 상각액, 정부보조금, 손상차손 등으로 구분기재

감사인
나. 감사인

(엄격감사)제약·바이오 업종의 연구개발비는 회계감사기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산업 특유의 유의적 항목이자 핵심 공시사항이므로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감사 실시

(입증경도)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한 회사의 입증자료를 검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의 적정성을 검토

◦또한 회사가 수행한 손상검사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성 검토

(주석공시)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공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 및 테마감리 실시 안내 [점검 및 테마감리 실시 안내]

□(점검 및 테마감리)금감원은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2018년 테마감리 회계이슈로 사전 예고한 바 있음(‘17.12.18. 보도자료)

*개발비는 테마감리 이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바 있음

◦이에 ‘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관련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 등을 신속히 분석·점검할 예정

◦분석·점검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하여 테마감리 착수

[주석공시 모범사례 2018-2]
K-IFRS 제1038호
개발비관련 주석공시

[주석공시 모범사례 2018-2]
K-IFRS 제1038호 개발비관련 주석공시

□(기본원칙)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많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제1038호)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관련 회계처리에 사용한 유의적인 측정기준,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충분히 공시해야 함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의 실정에 맞게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개발비 자산화기준: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K-IFRS 1001.117)

- (1)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 (2)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K-IFRS 1001.122)

□ 주석공시 모범사례 (예시: 제약·바이오업종)

<내부창출의 경우>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000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취득의 경우>

회사는 제3자로부터 신약 관련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등의 지출에 대하여 ……한 이유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손상차손 발생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 문단 118(5)(다)~(마)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K-IFRS 1038.120)

· 회계기간 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K-IFRS 1036.130)

- (1)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 (2)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이나 손상차손환입 금액
- (3)~(4) (생략)
- (5) 자산(현금장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과 그 회수가능가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인지 또는 사용가치인지
- (6) 회수가능가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인 경우에 다음의 정보
 - (가) ~ (다) (생략)
- (7) 회수가능가액이 사용가치인 경우에 사용가치의 현재 추정치와 과거 추정치(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된 할인을

주식공시 모범사례

<손상차손의 경우>

(단위: 천원)

분 류	개별자산	장부금액	손상차손 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당 기	누계액	
개발비	○○○	×××	(×××)	(×××)	사용가치
	△△△	×××	(×××)	(×××)	사용가치
	◇◇◇	×××	(×××)	(×××)	사용가치
...	...	×××	(×××)	(×××)	공정가치
	...	×××	(×××)	(×××)	사용가치
합 계		×××	(×××)	(×××)	

가. ○○○와 관련하여 …… 자료 등을 평가한 결과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장부금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나. △△△와 관련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이 늦어지고 경쟁 환경의 변화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을 ×××천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부금액을 동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 ◇◇◇와 관련하여 ◎◎◎사와 ××××년에 체결하였던 기술이전계약(License-out)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당기에 종료되었습니다. 동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을 ×××천원으로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동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라. …

<손상차손환입의 경우>

(단위: 천원)

분 류	개별자산	손상차손환입 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당 기	누계액	
개발비	□□□	(×××)	(×××)	사용가치
...	...	(×××)	(×××)	공정가치
합 계		(×××)	(×××)	

가. □□□와 관련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 등으로 인해 ××××년에 손상차손 ×××원을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정부의 판매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전액 환입하였습니다.

나. ...

<회수가능가액 추정 관련>

가. △△△ 및 ◇◇◇와 관련하여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나.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회사의 과거 영업성과와 미래 사업계획을 근거로 향후 ×개년 치를 추정하고, 이후의 현금흐름은 ×.×%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인 ×.×%로 추정하였습니다.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제조원가)	×××	×××
판매비와 관리비	×××	×××
영업외비용	×××	×××
...	×××	×××
합계	×××	×××

3.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등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 다음 사항도 추가로 공시한다. (K-IFRS 1038.122.)

(1)(생략)

(2)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장부금액과 잔여상각기간

(3)~(5)(생략)

주석공시 모범사례 (예시: 제약·바이오업종)

(단위: 천원)

분류	개별자산명	장부금액	잔여상각기간)
개발비	○○○	×××	×년
	△△△	×××	×년
	◇◇◇	×××	-
...	...	×××	×년

주: 1) 상각을 시작한 경우 잔여 상각기간을 기재하고, 시작하지 않은 경우 '-'로만 표시

가.○○○은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 통합 치료가 가능한 제품으로 201x년 판매승인 후 현재 발매 중입니다.

나.△△△은 기미치료제로서 201x년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은 심장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현재 임상 3단계로 201x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총액

기준서 주식공시 요구사항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K-IFRS 1038.126)

주식공시 모범사례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제조원가)	xxx	xxx
판매비와 관리비	xxx	xxx
...	xxx	xxx
정부보조금	(xxx)	(xxx)
합계	xxx	xxx

5. 무형자산 증가금액의 구분 표시(내부개발 및 외부취득)

기준서 주식공시 요구사항

· 무형자산은 각 분류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K-IFRS 1038.118)

(1)~(4) (생략)

(5) 무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할 내용

(가) 증가금액: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 개별 취득한 부분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나)~(아) (생략)

주석공시 모범사례

(단위: 천원)

구분	xxx	개발비	...	합계
기초 장부금액	xxx	xxx	xxx	xxx
증가금액				
내부개발	xxx	xxx	xxx	xxx
개별취득	xxx	xxx	xxx	xxx
사업결합취득				
...	xxx	xxx	xxx	xxx
감소금액				
상각	(xxx)	(xxx)	(xxx)	(xxx)
정부보조금	xxx	xxx	xxx	xxx
손상차손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기말 장부금액	xxx	xxx	xxx	xxx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21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공포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공포

□ 기획재정부는 2018. 2.13(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 당초 개정안과 달라진 부분과 그 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보류(소득령 §179, 법인령 §132)

당초 정부 개정안에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납세형평 제고 및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세법개정 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 비상장 주식 : 모두 과세 ○ 상장 주식 - 장외 거래 : 모두 과세 - 장내 거래 : 대주주 과세 ■ 대주주 범위: 25% 이상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상장 주식 - (좌 동) - 대주주 범위 확대 ■ 25% → 5% 이상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2018년 세법 개정시 검토

2. 납세자 권익 보호

□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의4)

< 개정이유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 적용시기 > 2018.1.1.부터 적용(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

현 행	개 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만 규정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실시 ○ 재조사 금지 < 신 설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좌 동) ○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 금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국기법 §81의8)

< 개정이유 > 세무조사권의 남용 방지 및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적용시기 > 2018.1.1.부터 적용(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관한 규정만 존재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명문화 <input type="radio"/>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국기법 §81의4 및 §81의11)

< 개정이유 >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화
 < 적용시기 > 2018.1.1.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2018.1.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세목 특성, 납세자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등을 고려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목별조사를 허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세무조사* 법적 근거 명확화 *전부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장, 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 <input type="checkbox"/> 부분세무조사의 허용사유 구체적으로 규정 <input type="radio"/> 사유 ①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②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③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④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해당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⑤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input type="radio"/> 부분세무조사의 제한 -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 조사는 상기 ①, ②를 제외하고 2회 이내로 실시
<input type="checkbox"/>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input type="radio"/>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input type="radio"/>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추가 (좌 동) <input type="radio"/>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 금번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03.04)을 뒤집는 것으로서 과거 유권해석에 따라 세무처리한 법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환급이 가능할 것임.

-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세제-18805, 2017.12.29.)

 -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설비는 반드시 사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이를 구비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처가 제공하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물적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택 제공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지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 법인세법 제27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급불산입에 관하여 제1호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을, 제2호에서는 ‘그 밖의 업무무관지출’을 규정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령상 유예기간을 경과하도록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위 업무무관자산으로, 제5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법인의 주주(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그 밖의 업무무관지출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업무무관자산이 있는 경우 차입금 이자 중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함(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참조).
 - 그러므로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택 제공에 해당하여 위 업무무관지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음.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